

인천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940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33,857,698원 및 그 중 232,399,158원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2023. 11. 27.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3,857,698원 및 그 중 232,399,158원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6. 17. 및 2022. 11. 2. 농,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 및 프랜차이즈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는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C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3. 7. 11. 주식회사 D에 위 2건의 대출금 채무 합계 233,253,9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후 C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854,7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416,460원이며,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가지급하기로 한 보증료는 42,080원이다.

다.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원고는 C에 대하여 233,857,698원(= 대위변제금 잔액 232,399,158원 + 채권 보전 비용 1,416,460원 + 추가보증료 42,0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잔액에 대한 202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B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농, 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C와 같은 인천 서구 E로 하여 2022. 11. 17. 설립된 회사로 대표자인 사내이사 F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마. C는 대출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매출감소 및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주거래처인 (주)농협회사법인 G의 폐업(2022. 11.경)으로 수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3. 1.경부터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었고, 2023. 5. 20.경 폐업신고를 한 후 2024. 2. 8.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4. 4. 26.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C는 대표이사 피고 B이 과거 염지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브랜드화한 ‘H’이라는 음식점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들에 염지한 닭을 납품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을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 B이 발명하고 출원한 ‘I’과 ‘J’에 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 피고 회사는 2023. 1.경 C와 C 본점 소재지(공장)내 집기, 기계류 시설일체(템블러, 절단기, 라벨슬링기, 순살절단기, 쟁장 냉동시설 등)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즈음부터 위 시설을 이용하여 계육의 가공, 유통, 판매업을 하고, 기존 C와 가맹계약을 맺은 H 가맹점에 염지한 닭을 납품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23. 3. 28.경 위 2건의 특허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H’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등록, 홍보, 영업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C의 위 구상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그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C와 동일한 회사인바,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피고 회사는 자신이 C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C는 형식상 법인이나 실질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개인기업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및 그 중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그 주장대로 단순히 C의 공장 내 기계, 설비 등을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C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C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와 설립목적 및 거래관계의 내용이 사실상 C와 동일하고, 임원진의 경우 유일한 사내이사 F는 C 주식의 86.25% 보유자이자 육류 염지 방법 특허 등록자인 피고 B의 아들이며, 설립 당시 감사인 K(2023. 2. 7. 사임)은 C의 감사이자 H도메인의 등록자이다.
- ② 피고 회사는 C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2022. 11. 17.경 설립되어 C가 정식으로 폐업을 하기 전인 2023. 1.경부터 C의 공장 내 시설 일체를 이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축산물 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기존 C의 거래처 및 H 가맹점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C 및 피고 B의 특허권도 무상으로 양도받았으며, 그로 인해 2023. 1.부터 2023. 12.까지 15억 원 이상의 매출수익을 발생시켰다.
-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C의 재정악화 및 그로 인한 사실상 폐업으로 인하여 H 가맹점에 염지 닭의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영세사업장인 가맹점들의 사정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C의 공장 내 기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 회사가 C 본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인 C에 임차보증금(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그 외에 피고 회사가 C로부터 이전받은 공장 내 시설, 설비나 특허권, 거래처 및 도메인 등 유, 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만 C의 파산절차에서 2024. 8. 7.에야 피고 회사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C의 공장 내 기계, 설비 및 특허권을 합계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3,857,698원 및 그 중 232,399,158원에 대하여 202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1. 27.까지 원고의 약정손해금률인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나 피고 B의 경우 원고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고 그 후 영업을 하다가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C의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 B이 C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